

공유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불복방법

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,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(1999.2.8.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,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 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.

(대법원 2001.06.01. 선고 2001다1633 판결)